

제 호

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 :

2. 대표자 : (생년월일 :)

3. 주소 :

4. 소재지 :

5. 지정조건 :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3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환경부장관

직인